

[2017년 6월 29일 소집 임시 주주총회 첨부파일 1]

1. 정관 일부 변경(안) 세부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u>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u></p>	<p>제 8 조(주식의 종류) <u>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u></p>	<p>중복항목삭제,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종류주식 추가</p>
<p><신설></p>	<p>제 8 조의 1(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u>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 다.</u> <u>②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 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을 부여한다.</u> <u>③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연 1%이상에서 발행 시 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u> <u>④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 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 가시켜 배당한다.</u> <u>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 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u> <u>⑥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 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u> <u>⑦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 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u></p>	<p>종류주식 관련 내용 추가</p>

	<p>로 한다.</p> <p>⑧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 8 조의 2<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p> <p>①회사는 제 8 조의 1 의 1 항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 회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상환전환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최초발행가 기준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상환 전환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p> <p>③상환전환우선주식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p> <p>④회사가 청산될 때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인수금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p>	<p>종류주식 관련 내용 추가</p>

	<p><u>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u> <u>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u> <u>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u> <u>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u> <u>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u> <u>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u> <u>는다.</u> <u>⑤다만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u> <u>항은 신주발행이사회의 결의에 따른</u> <u>다.</u></p>	
<p><신설></p>	<p><u>제8조의3(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u> <u>①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상환전환우</u> <u>선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10년</u> <u>이내에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상환</u> <u>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u> <u>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u> <u>다.</u> <u>②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 인하</u> <u>여 발행할 주식은 상환전환우선주식 1</u> <u>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u> <u>③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조건은 다</u> <u>음 각 호에 따른다.</u> <u>1.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주</u> <u>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u> <u>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u> <u>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을</u> <u>다음과 같이 조정한다.</u> <u>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u> <u>는 보통주식의 수=(주주의 1주당 취득</u> <u>가격 / 주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u> <u>하는 발행가격 등)</u> <u>2. 주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 (인수금액</u> <u>총액/상환전환우선주식 총수)로 한다.</u> <u>3.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u> <u>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u> <u>비율에 따라 조정된다.</u> <u>4.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u> <u>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u> <u>전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u></p>	<p>종류주식 관련 내용 추가</p>

	<p>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p> <p>④ 기타 전환 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 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 8 조의 4(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p> <p>①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주식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동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동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다.</p> <p>②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상환한다.</p> <p>③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액은 액면금액, 발행금액, 상환시의 시가 또는 발행금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하되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p> <p>④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 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p>	<p>종류주식 관련 내용 추가</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생략></p> <p>1~5<생략></p> <p>6.<신설></p> <p>7.<신설></p>	<p>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현행과 동일></p> <p>1~5<현행과 동일></p> <p>6. <u>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제 3 자(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7. <u>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또는 경영 자문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전환사채의 발행 조건 추가</p>
<p>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생략></p> <p>1~5<생략></p> <p>6.<신설></p> <p>7.<신설></p>	<p>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현행과 동일></p> <p>1~5<현행과 동일></p> <p>6. <u>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제 3 자(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7. <u>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또는 경영 자문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건 추가</p>

==== 문서의 끝 ====